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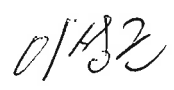



공사 시 방 서

<외부엘리베이터 반사판 설치 공사>

2012. 11.

	담 당	부 장	팀 장	본부장
결 재			전결	

B&G Metro

부산김해경전철운영(주)

제1장 총 칙

1-1 일반사항

1.1 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(주)가 발주한 “외부엘리베이터 반사판 설치 공사”에 적용하며,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따른다.

1.2 작업일반

- (1)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.
- (2)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가설재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내판, 위험표지판,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
- (3) 모든 자재는 KS 규격 또는 Q마크 인증 자재사용을 원칙으로하고, 자재 반입시 사전에 시공감리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시공기간 동안 타 공종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,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- (5) 철거된 자재를 감독이 지정한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(6) 철거재 및 제작 작업시 잔재 운반시 역사 내에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며, 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여야 한다.
- (7) 제작 설치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.
- (8) 기타 제작 설치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작업 중 엘리베이터가 중지되어서는 안되며, 탑승 승객에게 불편 및 미관상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(10) 계약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(전, 후)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공 완료 후 2부 제출하여야 한다.

1.3 설계변경

- (1) 계산 및 수량 착오 등에 의하여 공사내역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.
- (2) 공사 시공 중 “감”의 승인없는 임의의 공법변경 및 시공 등이 발생 시 도급액에서 감액 조치한다.

단, “감”의 공법개선 기술심의를 통하여 인정된 “을”이 제안한 공법에 의하여 절감된 공사비는 감액대상에서 제외, 이를 인정한다. 또한 공사여건에 따라 공종별 시공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는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.

- (3) 계약사항 변경은 “공사 완료 후” 도면 및 현장여건에 의한 시공 정미량에 의하여 정산한다.

1.4 현장대리인

- (1) “을”은 공사 착공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있으며, 공사 전반적인 사항의 책임자를 “갑”의 확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, 절대로 재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,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당사 임의대로 공사를 해지할 수 있다.
- (2)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사항 일체에 대하여 “을”이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며, 현장대리인계를 “갑”에게 제출한다.
- (3) 공사수행에 있어서 능력과 성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, “갑”은 임의 교체를 명하여 “을”은 3일 이내 교체하여야 한다.

1.5 “을”의 부담 항목

- (1) 현장설명서, 내역서,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아도 공사수행에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(2) “을”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
- (3) “갑”이 지급한 자재의 분실, 오염, 훼손에 대한 관리. “갑”으로부터 각종 자재를 인수한 후에 “을”의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, 오염, 훼손에 대한 책임은 “을”에게 있으며, 이 경우 “을”의 부담으로 변상, 구입, 시공하여야 한다.
- (4) “갑”은 지급자재(공기구류, 장비 포함)는 일체 없으며,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자재, 부품, 공기구류, 장비 등은 “을”이 주관하여 부담한다.

1.6 기타

- (1) “갑”은 “갑”의 사정이나 감독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,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다.
- (2) “을”은 입찰시 “갑”의 요구가 있을 시 특정내역의 일위대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공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“갑”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, 조기작업 및 작업 시간대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당초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.
- (4)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.
- (5) 현장 내 가설숙소는 인정하지 않으며, 가설 사무실과 창고는 “갑”이 지정하는 위치에 “을”이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정진행상 “갑”의 이전지시가 있을 시에는 “을”의 부담으로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.

제2장 시 공 내 용

2-1 공사장소 및 범위

(1) 공사장소 : 장신대역 ~ 사상역(평강역, 공항역 제외)

(2) 공사범위

- 외부 엘리베이터 에칭시트 설치(33개)
- 외부 엘리베이터 아크릴 미러 설치(33개)

(3) 설치 전후 예시

○ 설치 전



○ 설치 후



2-2 재료 및 설치공사와 검사

2.2.1 재료

- (1) KS 규격 또는 Q마크인증 제품을 사용하며 성능이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.
- (2) 에칭시트는 현 시설물과 동일한 재질 및 색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아크릴 미러는 충분한 반사율이 나타나야 하며, 표면에 흠이나 오염이 있어서는 안된다.
- (4) 아크릴 미러의 규격은 900mm X 1,300mm X 3mm 이며, 원판 가공 후 손실되는 부분(900mm X 500mm)은 반납하여야 한다.
- (5) 아크릴 미러 접착부는 3M테이프(양면전사테이프)로 시공한다.
- (6) 더불어 테이프는 미러의 전면에 균일하게 붙여야 한다.
- (7) 작업에 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.

2.2.2 설치공사

- (1) 에칭시트 시공 후 충분한 양생시간을 두어야 한다.
- (2) 아크릴 미러는 4면 중 상부를 면치기하여 날카롭지 않게 다듬어야 한다.
- (3) 1개를 샘플 시공한 후, 외관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시킨 후, 전량 시공한다.
- (4) 시공 후 견고히 부착이 되어야 하고, 마감이 미려해야 한다.

2.2.3 검사

- (1) 설치완료 후 자체검사 실시 후 담당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.
- (2) 현장 및 공사부위의 청소를 반드시 완료한 후 감독자 검사를 받는다.

2.2.4 준공승인 및 대가지급

- (1) 검사완료 후 대금지급 의뢰를 “갑”에게 요청하면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대가를 회계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한다.

제3장 안전에 관한 사항

- (1) 작업장에는 “작업중”이라는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안전에 만전을 기한다.
- (2) 당일 작업 종료 시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수거하여 일괄 반출토록 한다.
- (3) 현장 내 모든 출입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시 안전장구를 휴대 착용하여야 하며, “갑”측의 판단에 의해 불안정한 요소가 발견될 시에는 “갑”측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손실을 전액 “을”이 부담한다.

- (4) “을”은 당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언행이나 폭행, 절도, 불법단체 결성, 난동, 작업방해 및 속칭 “사보타지”를 하는자, 제반수칙에 불복하는 자 등은 입법조치나 추방하여야 한다.
- (5) “갑”의 직원지시에 불성실하거나,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당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며, 즉시 추방해야 한다. “을”이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최고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, 이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“을”의 책임이다.
- (6) 계약당사자는 작업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민,형사상 책임을 모두 진다.

제4장 품질보증기간 (하자기간)

- (1)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.
- (2) 하자기간은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.